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윤 희 윤(Hee-Yoon Yoon)*

목 차

- | | |
|---------------------------|-------------------------|
| 1. 서론 | 3.1 저작권 구성체계의 분석 |
| 2. 저작권법상 권리제한의 이론적 검토 | 3.2 저작자 권리제한규정의 분석 |
| 2.1 저작자 권리제한의 논거와 중요성 | 3.3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의 축조 분석 |
| 2.2 저작자 권리제한의 방식과 유형 | |
| 3. 주요 국가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 분석 | 4. 요약 및 결론 |

초 록

1956년에 영국의회가 도서관(이용자 또는 서비스)을 위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을 개정한 이래로 최근 몇 십년간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각국의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이유는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이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며,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하는데 중요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 6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현행 저작권법의 구조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비교·분석하였다.

ABSTRACT

Since the England's Parliament revised the British copyright law and enacted the first copyright exception specifically for libraries (user or service) in 1956, copyright exceptions applicable to libraries have been an important part of world copyright laws through the last few decades. Copyright exceptions for libraries are a critical legal tool to preserve intellectual and cultural heritage, promote equitable acc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to support learning and research. Based on these reasons, this study analyzed and compared the current state of copyright structure and limitations or exceptions for library in six major countries(United State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Japan, and Republic of Korea).

키워드: 저작권법, 도서관, 권리제한, 공정이용

Copyright Law, Library, Copyright Limitations, Fair Use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10년 10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10년 10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1월 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277-301, 2010. [DOI:10.4275/KSLIS.2010.44.4.277]

1. 서론

국내의 현행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31일에 최종 개정되었고 2010년 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 실정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수단적 가치라면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과 발전에의 이바지’는 목적론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것은 저작권법의 궁극적 목적이 전자에 내재된 수단적 가치보다 후자인 목적론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저작권 법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비록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공정한 이용을 활성화할 의도로 제한조항을 마련하여 왔으나, 그 기조와 내용은 여전히 권리보호에 치중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권리강화가 공정한 이용을 압도하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마차에 비유하면 권리보호와 공정이용이라는 양대 수레바퀴의 비중이 균형을 유지해야 저작권법이라는 마차가 제대로 움직이고 문화 및 관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실정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적 색채가 강하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가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이다. 「도서관법」 제2조 1호는 도서관을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

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나 자치단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도서관을 설립·운영해야 하며, 도서관은 대중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여 정보기본권 보장, 상대적 정보격차의 해소, 교육활동 및 연구역량의 제고,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 등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법의 관련조항이 문화기반시설인 도서관의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제약한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여전하므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대중의 공정이용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작자의 권리제한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을 축조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저작권법상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개선방향과 장애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리제한의 확대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후속연구의 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2. 저작권법상 권리제한의 이론적 검토

2.1 저작자 권리제한의 논거와 중요성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은 다양한 각도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광의적 스펙트럼을 간추리면 <표 1>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저작자의 권리로 한정하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저작재산권이 저작권의 요체에 해당한다.

〈표 1〉 저작권의 광의적 스펙트럼

저작권		지분권(구체적인 권리)
저작자의 권리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양도권, 배포권, 대여·대여권, 번안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연주가의 권리	허락권	녹음·녹화권, 방송·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
	보상·2차 이용료 청구권	상업용 레코드의 방송 등에 관계되는 2차 사용료 청구권, 상업용 레코드의 대여에 관계되는 보상청구권
	연주가 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레코드·제작자의 권리	허락권	복제권, 송신가능화권, 양도권, 대여권
	보상·2차 이용료 청구권	상업용 레코드의 방송 등에 관계되는 2차 사용료 청구권, 상업용 레코드의 대여에 관계되는 보상청구권
방송사업자의 권리	허락권	복제권, 재방송권, 유선방송권, 송신가능화권, TV방송의 전달권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허락권이며, 이를 법제화한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창작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제도적 본질과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반면에 저작권법이 권리보호를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에 공평한 접근과 공정한 이용을 위축시키거나 저해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도 기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각국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권리제한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권리제한 또는 권리에외¹⁾ 규정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규정한 권리보호에 대한 예외조항을 말한다. 환언하면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를 보장하는 대신에 공정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적 규정이 권리제한이다. 실제로 대다수 국가

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본질적 및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저작권의 제한, 강제허락, 보호기간의 한정, 보상금제도 등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면서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 취지는 저작물의 공공재 특성 및 공익적 관점, 다른 권리와 균형 내지 조정의 측면, 저작물의 특성이나 이용행태를 감안하여 권리자에게 별다른 영향이 주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아 권리행사의 타당성이 미약하다는 견해 등에서 기인한다. 이를 포함한 권리제한의 배경과 논거, 필요성과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epage 2003, 4-5; 横山 久芳 2009, 48-62; 崔鍾喆 2009, 17-41).

첫째, 모든 저작물의 본질은 지식정보이며 공공재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개인의 일반적인 재산과 달리 문화발전을 위한 공공재적 성격을

1)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저작권법에 등장하는 용어는 저작자 권리의 제한(limitation), 예외(exception), 면책(exemption) 등이 있다. 제한은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예외는 권리보호의 대상이지만 특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양자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혼용되고 있다. 다만 면책은 도서관처럼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그 책임을 도서관에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제한이나 예외와 차이가 있다.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오래 전부터 대중에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으나, 18세기 후반부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제·개정하여 저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권리보호에 치중할 경우,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고 문화발전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도 저작권법상 권리제한의 근거로 작용한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국제적 지침인 베른협약(The Berne Convention 1979)은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되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²⁾를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복제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3단계 테스트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인용, 교육적 목적으로의 이용', '신문 및 정기간행물 기사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셋째, 권리제한의 근거는 저작권제도의 목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은 입법취지를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통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는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권리를 설정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조적 활동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공중전파를 통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부연하면 저작권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며 이를 위한 수단이 권리보호와 공정이용이다. 따라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과 국가사회의 문화적 편익을 조화시키는 동시에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려면 저작

권을 제한해야 하며, 상위의 목적적 가치인 문화발전을 위해서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저작자 권리제한의 근거는 저작권의 내재적 한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대다수 유체 재산과 달리 저작물은 무수한 복제가 가능하지만, 그 결과로 원본이 손상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다시 말해서 원본과는 별개로 많은 복제물을 제작·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더라도 실제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의 총량이 불합리하게 감소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다수 저작물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사회적 도움으로 창작되기 때문에 창작자에게 절대적 권리를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한계와 특성을 감안하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다섯째, 저작자의 권리제한은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정당성이 존재한다. 저작권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므로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하여 절대시할 수 없다.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 및 학문의 자유에 저촉되거나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권리제한은 불가피하다.

여섯째, 저작자의 권리제한을 통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측면에서도 정당화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는 미국 컴퓨터통신업계의 비영리단체인 CCIA(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가 2007년 9월 12일자로 연방의회

2) 특별한 경우에는 각국의 입법으로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되(1단계), 그러한 복제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며(2단계),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3단계).

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규정된 공정이용이 2006년에 4조 5천억 달러 이상(미국 GDP의 1/6에 상당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CCIA 2006, 44).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반론이 제기된 바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공정이용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이 막대하므로 권리제한도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금의 정보환경은 저작물의 디지털 유통을 촉진한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로 이용될 수 있는 저작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이용을 보장하려면 저작권의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법이 시대착오적 과잉보호 조항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2.2 저작자 권리제한의 방식과 유형

대다수 국가의 저작권법은 권리보호를 우선 하면서 공정이용을 위한 권리제한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의 문화적 편익을 조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의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은 양자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해당하며, 그 방식과 유형은 입법형식과 전체구조,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행위, 내용적 측면으로 대별할 수 있다.

2.2.1 입법형식 및 구조적 측면

오래 전부터 영미법계 저작권은 공공의 이익을 강조한 반면에 대륙법계는 창작(저작)자의 사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법계간 차이는 권리제한을 위한 입법형식 내지 규정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는 일반조항을 둬으로써 저작자의 권리를 더 제한하는 입법형식을 취하였다. 부연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지 않고 추상적 기준을 충족시키면 권리자의 허락여부와 무관하게 공정한 이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비한정적 포괄주의와 개방적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대륙법계는 권리제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법화한 방식으로서, 한정적 열거주의와 폐쇄적 시스템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일반규정도 미국형 공정이용(Fair Use)과 영국형 공정이용(Fair Dealing)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전자(FU)는 공정이용을 위한 권리제한의 일반조항을 규정한 후에 일부 개별조항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방식을 말한다. 반면에 후자(FD)는 개별적 권리제한 조항의 내용에 따라 중간적인 일반조항, 예컨대 영국의 저작권법처럼 사적 학습 및 비영리 연구목적의 공정이용(제29조), 비평과 평론을 위한 공정이용(제30조(1)), 시사보도의 공정이용(제30조(2))을 규정한 방식이다. 따라서 입법형식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유형은 영미법계의 일반규정과 대륙법계의 개별규정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 3단계 테스트형을 포함시키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文化廳 2009, 17-110; 文化廳(別冊) 2009, 4).

- ① 미국형 공정이용(FU) 규정을 도입한 국가: 미국, 대만, 필리핀, 이스라엘 등
- ② 영국형 공정이용(FD) 규정을 도입한 국가: 영국, 캐나다
- ③ 특정한 이용목적에는 영국형 공정이용 규

정을 도입하고, 기타 이용목적에는 미국형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국가: 싱가포르

- ④ 영국형 공정이용 규정을 판단하는 요소로서의 미국형 공정이용 규정을 도입한 국가: 홍콩, 뉴질랜드 등
- ⑤ 영국형 공정이용 규정에 3단계 테스트형 규정을 추가로 도입한 국가: 호주
- ⑥ 대륙법계의 개별규정을 도입한 국가: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2.2.2 저작물 종류 및 이용행위적 측면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때 대상물의 종류와 그들을 이용하는 행위적 측면에서 제한(예외)하는 유형은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박덕영 2008, 327-328).

첫째, 특정한 유무형의 저작물을 권리보호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는 경우로, 통상 권리제한이라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베른협약의 파리개정을 들 수 있는데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입법, 사법, 행정적 성격의 공문서(제2조 4항), 법정 진술(제2조의 2항 1)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저작물의 권리보호는 인정하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어떤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즉 특정 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로 통상 예외규정 또는 면책조항으로 지칭된다. 가령 시사보도나 교육적 목적과 같이 특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법조문에서 '허용되는 행위' 혹은 '보호에서의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의 합법적 인용권(제10조 제1항), 수업목적의 이용(제10조 제2항), 언론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예외(제2조 8항), 복제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제9조 제2항), 영상저작물 제작에

의 기여(제14조의 2의 2b) 등이 해당된다.

셋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제한적 이용행위를 강제로 허락한 경우로, 대개 '강제허락'(compulsory licenses) 또는 '의무허락'(obligatory licenses)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유형을 베른협약에서는 음반제작에 관한 강제허락, 저작물의 방송이용에 대한 강제허락(제11조의 2의 2), 방송되는 저작물의 일시적 기록(제11조의 2의 3), 개발도상국에 대한 강제허락(파리개정의 부속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2.3 기타 권리제한의 내용적 측면

그 외에도 내용적 측면에서 권리제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 ① 저작자의 권리보호가 저작물 이용의 성질이나 목적상 타당하지 않은 경우
- ② 교육, 학습 등 공익상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다른 권리와의 조정 내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 ④ 사회적 관행을 감안할 때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또는 심각하게 해칠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3. 주요 국가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 분석

3.1 저작권 구성체계의 분석

먼저 미국의 저작권법은 1787년에 영국의 '앤여왕법'(the Statute of Anne)에 기초하여

미합중국헌법(United States Code)에서 저작자의 권리보호를 선언한 것을 계기로 1790년에 최초로 제정하였다. 1909년과 1976년에 각각 대폭 개정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베른협약을 준수하여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현재 미합중국법전 제17편(Title)에 수록되어 있는 저작권법(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Laws 2009)의 대상은 언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음악, 연극, 무언극과 무용, 회화·도형·조각(사진 포함),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저작물, 녹음물, 건축, 편집저작물(DB 포함) 및 이차적 저작물이며, 권리내용은 <표 2>와 같이 총 6가지(복제권, 배포권, 연주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디지털 녹음송신에 의한 연주권)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은 1710년에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 회자되는 앤여왕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개정연도는 1842, 1911년, 1956년 등이며 1988년에 현행 법률명인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로 정립되었다. 그 이후에도 부분 개정이 계속된 현행 저작권법은 대상물을 문예(DB 외의 편집물, 프로그램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설계자료 포함), 연극(무도나 무언극 포함), 음악, 미술(도화, 건축, 사진, 미술공예의 저작물 포함), 녹음물, 영화, 방송, 발행된 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저작지분권의 내용은 <표 2>에서 총 6가지(복제권, 공중 배포권, 대차·대여권, 공중예의 실연·상영·연주권, 공중송신권, 번안권)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1965년에 제정된 독일의 저작권법(Urheberrechtsgesetz)은 문화·예술분야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이다. 영미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1998)은 그 대상을 문학, 학술, 미술, 언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 음악, 무언극(무용 포함), 조형 미술(건축 포함), 사진, 영화, 도면, DB 저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권은 <표 2>와 같이 총 10가지(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구술·공연·상영권, 방송권, 녹화물·녹음물에 의한 재생권, 방송 및 공중제공에 의한 재생권, 개작·번안권, 저작물 접근권, 추급권)이다. 그 가운데 영미법에 없는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이 계속해서 판매가 될 때 저작자가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넷째, 프랑스는 1791년에 상연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령이, 1793년에 문학·예술분야 저작자의 복제권을 부여한 저작권령이 제정되었다. 1957년에는 통합법 형태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고 1985년에 일부 개정을 거쳐 1992년에 지적재산권법으로 전면 개편되었다. 현행 저작권법(Loi no. 2006-961 du 1 août 2006)의 대상 자료는 언어, 음악, 무용·무언극 등, 미술(건축 포함)·응용미술, 사진, 영화, 지도·도형·도면, 소프트웨어(준비자료 포함), 복장·장식, DB 등이다. 이들의 지분권은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총 6가지(복제권, 번역·개작·번안·편곡권, 소프트웨어의 복제·번역·개작·번안권, 상연·연주권, 양도권, 추급권)로 구분하고 있다.

다섯째, 일본은 1899년에 근대적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전면 개정된 것이 1970년의 저작권법이며, 그 후에도 38번이나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법률 제73호)은 저작물의 범주를 언어, 음악, 무용 등, 미술, 건축, 도형, 영화, 사진, 프로그램, 편집물, DB로 규정하고 있다. 이

〈표 2〉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 권리내용 구성

국 가	조문번호	주요 권리의 내용	비 고
미 국	106(1)	복제권	녹음물은 증제하는 경우에만 적용됨(114조)
	106(2)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106(3)	배포권	적법하게 작성, 이전된 경우는 권리가 소멸됨(109(a)), 다만 레코드,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영리목적의 대여에 권리가 미침(109(b))
	106(4)	연주권	한국 저작권법의 상연, 상영, 방송, 송신에 해당함
	106(5)	전시권	대상: 언어, 음악, 연극·무언극, 무용, 회화, 도형, 조각
	106(6)	디지털 녹음송신에 의한 연주권	대상: 녹음물
영 국	17	복제권	-
	18	공중배포권	EU지역 내 최초의 적법한 양도로 권리가 소멸됨
	18(A)	대차·대여권	대상: 문예, 연극, 음악, 미술(건축물 등을 제외), 녹음물, 영화의 저작물
	19	공중예의 실연·상영·연주권	대상: 문예, 연극, 음악, 녹음물, 영화, 방송의 저작물
	20	공중송신권	대상: 문예, 연극, 음악, 미술, 녹음물, 영화, 방송의 저작물
	21	변안권	대상: 문예, 연극, 음악의 저작물
독 일	16	복제권	-
	17	배포권	최초 적법한 양도로, 임대를 제외한 권리가 소멸됨
	18	전시권	-
	19	구술·공연·상연권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에 의한 공중저작권이 포함됨
	20	방송권	유선방송, 유사 기술수단에 의한 방송이 포함됨
	21	녹화물, 녹음물에 의한 재생권	녹음물, 레코드를 공중에 지각 가능하게 할 권리
	22	방송 및 공중제공에 의한 재생권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에 의한 공중저작을 가능하게 할 권리
	23	개작·변안권	저작자가 복제물 등을 제작할 경우
	25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	-
26	추급권	미술저작물이 계속 판매될 때 저작자가 매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는 권리	
프랑스	122-1, 3	복제권	-
	122-4	번역·개작·변안·편곡권	-
	122-6	소프트웨어의 복제·번역·개작·변안권	122(6)의 1 규정을 준수조건으로 함
	122-1, 2	상연권, 연주권	공중예의 전달, TV방송 등이 포함됨
	122-7	양도권	-
	122-8	추급권	-
일 본	21	복제권	-
	22	상연(上演)·연주권	-
	22의 2	상영권(上映權)	-
	23	공중송신권 등	-
	24	구술권	-
	25	전시권	-
	26	배포권(영화저작물)	-
26의 2	양도권(영화저작물 외, 최초 적법한 양도로 권리 소멸)	-	

국 가	조문번호	주요 권리의 내용	비 고
일 본	26의 3	대여권(영화저작물 외)	-
	27	번역·번안권 등	-
	28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 권리	-
한 국	16	복제권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도 해당됨
	17	공연권	상연, 연주, 가창, 상영, 기타로 공개하는 것이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녹화물을 재생·공개도 포함됨
	18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송신권
	19	전시권	대상: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20	배포권	판매, 대여, 대출, 점유이전, 기타가 포함됨. 다만, 저작물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는 제외
	21	대여권	대상: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수입권: 인정하지 않음
	22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들을 대상으로 규정한 지분권은 <표 2>에서 11가지(복제권, 상연·연주권, 상연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번안권, 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저작자 권리)로 세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저작권법은 1877년의 일본 저작권법을 참고하여 1957년(법률 432호)에 제정되었다. 그 이후에 18차례에 걸쳐 개정된

현재의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의 대상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적 저작물이 포함되며, 지분권은 <표 2>에서 총 7가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로 구분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주요 국가의 저작권재산권의 권리내용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복제권과

<표 3>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권리내용 비교

권리내용(지분권)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한 국
복제권	√	√	√	√	√	√
공연권(상연, 상영, 연주)	√	√	√	√	√	√
구술권			√		√	
공중(재생)송신권		√	√		√	√
전시권	√		√		√	√
배포권	√	√	√		√	√
양도권				√	√	
대여권		√			√	√
번역·번안권		√	√	√	√	√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	√				√	√
추급권			√	√		

공연권은 모든 국가가 규정한 반면에 공중송신권과 번역·변안권은 미국만이 제외시키고 있다. 공중송신권의 경우, 미국은 저작권접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는 실연·레코드·방송도 저작물로 보호하며, 송신행위를 배포권으로 규율하는 점이 특이하다. 구술권은 독일과 일본이 권리로 인정하는 반면에 양도권은 프랑스와 일본이,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미국·일본·한국이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추급권은 독일과 프랑스의 저작권법에만 존재한다.

3.2 저작자 권리제한규정의 분석

3.2.1 미국

미국 저작권법의 권리제한규정은 1976년의 형평법 원리를 도입하여 성문화한 것으로서, 제107조에 일반조항인 공정이용(FU)을 규정하고 제108조~제122조에 걸쳐 개별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간추리면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제107조(배타적 권리의 제한: 공정이용)는 '비평, 해설, 뉴스 보도, 교수, 연구,

<표 4> 미국 저작권법의 권리제한규정 분석

조문번호	권리제한규정의 내용
107	배타적 권리의 제한: 공정이용
108	배타적 권리의 제한: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의 복제, 배포
109(c)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실시하는 영사에 의한 전시
109(e)	코인식 게임기기의 소유자에 의한 게임의 실연, 전시
110(1~10)	비영리 교육기관의 실연·전시(1), 교육활동을 위한 송신에 의한 실연·전시(2), 예배과정에서 행하는 실연·전시(3), 비영리 무료의 실연(4), 가정의 수신장치로 수신되는 실연·전시를 수록하는 송신의 전달(5), 공중수신을 의도한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전시(5), 농업이나 원예의 품평회 등에서의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6), 시청각장치 등 관측목적의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의 실연(7), 시청각장애자 등을 위한 비연극적 언어저작물의 송신에 의한 실연(8), 시각장애자 등을 위한 연극적 언어저작물의 송신에 의한 실연(9), 퇴역군인단체 등이 주최하는 사교행사에서의 비연극적 언어 또는 음악저작물의 실연(10)
111~112	배타적 권리의 제한: 2차 송신(111조), 송신을 위한 일시적 고정(112조)
113(c~d)	실용품에 복제된 저작물의 배포·전시 등(c), 건축물에 삽입된 시각예술 저작물물의 동일성보관 유지권에 관한 규정의 부적당(d)
114(b)	텔레비전·라디오 교육프로그램에 수록된 녹음물과 관련되는 복제, 변안, 배포
114(d)(1~2)	녹음물의 디지털송신에 의한 실연권의 제한(비가입 계약방송 등)(1), 가입계약 디지털 음성 송신 등에 의한 실연에 관한 법정이용 허락(2)
115~117	비연극적 음악저작물에 대한 레코드의 작성·배포를 위한 강제이용 허락(115조), 코인식 레코드 연주기를 이용한 공중실연을 위한 교섭에 의한 이용 허락(116조), 프로그램의 카피 소유자의 추가적 카피·변안물의 작성 등(117조)
118(d)	비상업적 교육방송국이 실시하는 저작물의 실연, 전시 등
119	가정 내 시청을 위한 슈퍼스테이션, 네트워크국의 2차 송신
120(a~b)	공적 건축저작물의 화상표현물에 대한 작성·배포·전시(a), 건축물의 개 보수 및 파괴(b)
121	시각장애인,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제, 배포
122	위성통신 사업자에 의한 지역시장 내의 2차 송신

조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공정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이용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되, 4가지 법정 요소(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성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과 실재성, 이용이 저작권 자료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음으로 일반조항에 이어 제108조~122조에서는 개별조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07조와 제108조 이하의 법리적 상관관계 내지 위치설정에 대해서는 제107조가 제108조 이하의 권리제한을 보완한다는 주장과 107조의 구체적인 예시가 제108조 이하의 개별조항이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제108조가 '도서관 및 기록관에서의 복제·배포'에 대한 권리제한인데, 이에 대해서도 제107조와는 별

개인 예외조항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三井情報開發株式會社 総合研究所 2006; 横山 久芳 2009).

3.2.2 영국

세계 최초로 저작권법을 제정한 영국의회는 1956년에 이를 개정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바 있다. 현재의 저작권법 권리제한규정을 발췌·요약하면 <표 5>와 같다. 제28조의 도입규정에 이어 제29조~제31조에는 공정이용(FD)을 위한 일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2조~제76조에 걸쳐 개별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먼저 일반규정은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의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29조(연구 및 사적 학습)와 제30조(비평·평론·시사보도)로 한정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의 경우는 이

<표 5> 영국 저작권법의 권리제한규정 분석

권리제한규정의 내용		조문번호
일반규정	기기를 사용할 때 및 통신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28A
	연구 및 사적 학습	29
	비평, 평론, 시사 보도	30
	저작권 자료의 부수적 삽입	31
시각장애인	사적 이용을 위한 접근가능한 복제물 작성	31A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수의 복제	31B
	매개적인 복제 및 기록	31C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의 적용 제외	31D
	제한 등 저작권 침해	31E
	31A~E에 관한 정의 및 기타 보충조항	31F
교육	수업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	32
	교육적 이용을 위한 모음집	33
	교육기관 활동과정으로서의 저작물 실연·연주·상영(34조), 교육기관 방송의 녹음(35조), 문장과 구절의 복사·복제(36조), 복제물 대여(36조의 A)	34~36A

권리제한규정의 내용		조문번호	
도서관과 기록관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소개	37	
	사서에 의한 복제: 정기간행물 기사	38	
	사서에 의한 복제: 발행된 저작물의 부분	39	
	동일한 자료의 다수 복제물 작성에 대한 제한	40	
	도서관 또는 기록관에 의한 복제물 대여	40A	
	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 제공	41	
	사서 또는 기록관리자에 의한 복제: 저작물의 대체복제물	42	
	사서 또는 기록관리자에 의한 복제: 미간행물	43	
	수출의 조건으로서 필요한 저작물의 복제물	44	
	법정 기탁도서관	44A	
행정	의회 및 재판 수속(45조), 왕립위원회 및 법정 조사(46조)	45~46	
	일반 열람을 위한 제공 또는 공적 등록부에 기재된 자료	47	
	공무과정에 대하여 국왕에게 전달되는 자료(48조), 공적 기록(49조), 법정 권한에 근거한 행위(50조)	48-50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예비 복제물	50A	
	프로그램의 역 컴파일(50조의 B), 관찰·연구·시험(50조의 BA)	50B~BA	
	적법한 사용자에게 허용된 기타 행위	50C	
DB	DB와 관련하여 허용된 행위	50D	
의 장	의장문서 및 모형	51	
	미술저작물에서 파생되는 의장의 이용효과	52	
	의장 등록을 신뢰하기 위한 행위	53	
서 체	인쇄물의 서체 사용(54조), 특정 서체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물품	54-55	
전자형 저작물	전자적 형식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물 이전	56	
잡 칩	무명 또는 가명사용의 저작물: 저작권 소멸 또는 저작자 사망추정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행위	57	
	문예, 연극, 음악, 예술	말로 표현된 어떤 종류의 초고나 기록물의 사용	58
		공중의 낭독 또는 낭송무용(59조), 학술상 또는 기술상의 논문의 적요(60조), 민요의 녹음물(61조)	59~61
		공개되는 미술저작물의 표현(62조)과 판매광고(63조), 동일한 미술가에 의한 이후의 저작물 작성(64조)	62~64
		건축물의 개축	65
	대 여	어떤 저작물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여	66
	영화, 녹음물	영화: 저작권 소멸 등의 추정에 근거하여 허용되는 행위	66A
		클럽, 협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녹음물의 연주	67
	방송	방송 목적의 부수적 녹음·녹화(68조), 방송감시 및 관리목적의 녹음·녹화(69조), 타임 시프트 목적의 녹음·녹화(70조)	68~70
		방송사진(71조), 공중을 위한 방송의 무료 상영 혹은 연주(72조)	71~72
		유선에 의한 무선방송의 수신 및 재송신(73조), 제73조 제4항에 따라 지불되는 사용료, 기타 금액(73조의 A)	73~73A
방송의 자막스파가 삽입된 복제물 제공		74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녹음, 녹화		75	
번 안	번안	76	

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제한하는 동시에 비상업적 연구로 국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31조는 저작권이 부여된 자료의 부수적 삽입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지 않을 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으로 개별조항은 미국과 다른 체계를 유지하면서 항목별로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항목별 권리제한의 내용은 시각장애인(제31조의 A~F), 교육(제32조~제36조A), 도서관과 기록관(제37조~제44조A), 행정(제45조~제50조), 프로그램(제50조A~C), DB(제50조의 D), 의장(제51조~제53조), 서체(제54조~제55조), 전자형 저작물(제56조), 압축(제57조~제75조), 변안(제76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은 도서관 및 기록관, 사서에 의한 복제(정기간행물의 기사, 저작물의 일부,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

제공), 동일한 자료의 다수 복제물 작성에 대한 제한, 사서 또는 기록관리자에 의한 복제물 대여 및 복제(대체복제물, 미발간 저작물), 수출 조건으로서 필요한 저작물의 복제물, 법정 기탁 도서관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3.2.3 독일

독일의 저작권법에는 영미의 공정이용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제한규정이 없는 대신에 <표 6>에 집약한 것처럼 제45조~제60조에 걸쳐 개별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개별조항 외에도 권리제한이 가능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제24조 제1항은 '독립적 저작물로서, 타인의 저작물과 무관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표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리제한에 상당하는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타

<표 6> 독일 저작권법의 권리제한규정 분석

조문번호	권리제한규정의 내용	비 고
45	사법 및 공공의 안전	-
46	교회, 학교 또는 수업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편집물	-
47~48	학교방송(47조), 공중연설(48조)	-
49~51	신문기사 및 방송해설(49조), 시사적 사건에 관한 시청각적 보도(50조), 인용(51조)	-
52	공중재생	비영리 무료 등의 경우
52(1)	수업 및 연구를 위한 공중전달	비영리적 목적에 한함
52(2)	도서관 등에 의한 열람용 전자단말기에 의한 재생	EU지령에 따라 제2 바스켓에 의해 신설
53	사적 및 기타 자기이용을 위한 복제	녹음녹화, 사진복사에는 청구권이 있음
53a	도서관이 주문받아 행하는 복사본의 송부	제2 바스켓에 의해 신설
55	방송사업자에 의한 복제	원칙적으로 방송 후 1개월 내 삭제
55a	DB 이용	-
56	영업에 의한 복제 및 공중재생	-
57	중요하지 않은 부수물	-
58~59	전시·공중판매 및 공중이용 시설에서의 저작물(58조), 공공장소에서의 저작물(59조)	-
60	초상	-

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독자적인 저작물을 창작할 경우에는 그 창작성이 원작의 창작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원작의 저작권과 무관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다. 또한 제53조(사적 및 기타 자기이용을 위한 복제)는 경미한 이용에 한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시 권리제한에 해당한다.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제52조(1)(도서관 등에 의한 열람용 전자단말기에 의한 재생)과 제53조(1)(도서관이 주문받아 행하는 복사본의 송부)이다. 전자는 EU의 지령을 수용한 조항이며, 후자는 신설된 것이다.

3.2.4 프랑스

프랑스의 저작권법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조항이 없다. 그 대신에 <표 7>과 같은 개별조항을 두고 있다. 즉, 제122-5조의 (1)~(7)은 사적 및 무상의 상연·연주,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인용과 보도, 교육목적의 상연·연주·복제, 패러디, 전자DB의 내용 접근, 일시적 복제, 장애인을 위한 상연·연주·복제 등에 한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과 관련된 권리제한은 제122-5조의 (8)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존목적의 복제로 한정하고 있다.

<표 7> 프랑스 저작권법의 권리제한규정 분석

조문번호	권리제한규정의 내용	비 고
122-5(1)	사적, 무상의 상연·연주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며, 이하 동일함
122-5(2)	사적 이용 목적의 복제	미술저작물, SW, 전자DB를 제외한 사적 복제에 대한 보상(311-1)
122-5(3) a~d	요약과 짧은 인용, 신문·잡지의 논설 소개, 공개연설의 시사보도를 위한 전달: 판매용 미술저작물의 설명을 위한 복제	-
122-5(e)	교육 목적의 상연, 연주, 복제	보상지불 의무의 부여, 2009년 1월 1일 시행
122-5(4)	패러디(패러디, 모작 및 풍자화)	다만 해당분야의 결정을 고려함
122-5(5)	전자DB의 내용접근에 필요한 행위	계약에서 정하는 사용의 한도 내
122-5(6)	기기이용 및 통신과정의 일시적 복제	SW 및 DB 외의 저작물만 적용
122-5(7)	공적 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비영리 복제, 상연, 연주	-
122-5(8)	도서관 등에서 보존목적, 열람조건의 복제	-
122-5(9) 1	보도를 위한 복제	균형결여나 직접적으로 무관하면 보상 의무
122-5(9) 2	3단계 테스트(TST)	예외규정 해당여부를 명확하게 할 의도로 추가
122-6(1)	SW 사용을 위한 필요한 행위	-
122-6(2)	SW의 보전용 카피의 제작	SW사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2-6(3)	SW 기능의 관찰, 연구, 검사	SW의 기초인 개념 및 원리를 결정하기 위함
122-6(4)	SW 코드의 복제 또는 형식의 번역	122-6조의 1호나 2호에 규정된 복제나 번역이 다른 SW와 독립적으로 창작된 SW의 상호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려면 불가피한 경우

3.2.5 일본

일본의 저작권법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일반규정을 두지 않은 채 개별조항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간추리면 <표 8>과 같다. 즉, 복제와 녹음, 인용과 이용, 상연과 송신, 전시 등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제39조~제69조에 걸쳐 열거주의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과 관련한 권리제한은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에서 규정하고 있다.

3.2.6 한국

한국의 저작권법도 독일, 프랑스, 일본처럼 일반규정을 두지 않은 채 열거형 개별조항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간추린 <표 9>를 보면 상술한 일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제39조(사적 이용)와 제29조(비영리성 공연과 방송), 둘째 공익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을 위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의 이용), 제25

<표 8> 일본 저작권법의 권리제한규정 분석

조문 번호	권리제한규정의 내용	비 고	저작인접권 에의 준용
30	사적 사용을 위한 복제	녹음녹화에 보상금 적용	√
3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32	인용		√
33	교과용 도서 등에서의 게재	보상금 적용	
33의 2	교과용 확대도서 등의 작성을 위한 복제	영리목적에 보상금 적용	
34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방송 등	보상금 적용	
35~37	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의 복제 등(35조), 시험문제 복제 등(36조), 점자에 의한 복제 등(37조)		√
37의 2	청각장애자를 위한 자동공중송신		
3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연 등	영화배포에 보상금 적용	√
39~41	시사문제 논설의 전재 등(39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40조), 시사사건 보도를 위한 이용(41조)		√
42	재판 수속 등에서의 복제		√
42의 2	행정기관 정보공개법 등에 의한 개시를 위한 이용		√
44	방송사업자 등에 의한 일시적 고정		√
45~47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소유자에 의한 전시(45조), 공개 미술저작물 등의 이용(46조), 미술저작물 전시에 수반하는 복제(47조)		
47의 2	프로그램 저작물의 복제물 소유자에 의한 복제 등		
47의 3	보수, 수리 등을 위한 일시적 복제		√
47의 4	복제권의 제한에 의해 작성된 복제물의 양도		√
67~69	저작권자 불명 등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이용(67조), 협의 불성립 등에 해당하는 저작물의 방송(68조), 상업용 레코드에의 녹음 등(69조)		

〈표 9〉 한국 저작권법의 권리제한규정 분석

조문번호	권리제한규정의 내용	비 고	
		출처 명시 제외	프로그램 적용 제외
23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24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25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26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27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2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29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30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31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32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
33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34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	
35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36	번역 등에 의한 이용		

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셋째 다른 권리와 의 조화를 위한 제35조(미술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각국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및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요약하면 〈표 10〉

과 같다. 첫째,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조항은 미국과 영국이 규정한 반면에 나머지 국가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둘째, 개별조항은 영미와 한일의 저작권법이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개괄적이다. 셋째, 도서관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복제는 모든 국가가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였으나, 배포(제공)는 영미와 독일이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전송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여는 영국의 저작권법이, 재생은 독일에서 규정하고 있다.

〈표 10〉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권리제한규정 비교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한 국
공정이용을 위한 입법형식	일반조항 설치	○	○	×	×	×	×
	개별조항의 상세성	○	○	△	△	○	○
도서관 관련 권리제한내용	복 제	○	○	○	○(보존용)	○	○
	배포(제공)	○	○	○			○(전송)
	대 여		○				
	재 생			○			

3.3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의 축조 분석

2008년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184개국) 가운데 149개국을 대상으로 도서관 및 기록관에 대한 저작자 권리제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28개국(85.9%)이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도서관의 복제가 27개국(18.1%), 연구학습용 복제가 74개국(49.7%), 보존용 복제가 72개국(48.3%), 대체용 복제가 67개국(45.0%), 상호대차(ILL)가 23개국(15.4%), 문헌제공서비스(DDS)가 11.4%,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의 금지가 26개국(17.4%)이었다(Crews 2008, 8-9). 이들 가운데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규정은 대체로 복제와 배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조문을 정밀 분석하면 자료보존, 학습연구 지원, 상호대차서비스, 장애인서비스, 기술적 보호조치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에 최근의 선행연구(Crews, 3-11; 三井情報開發株式會社 總合研究所 2006, 195-424)와 각국 저작권법의 전문을 근거로 축조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3.1 자료보존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자료보존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를 허용한 조항을 발췌·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먼저 미국의 저작권법은 도서관의 자료보존용 복제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제한을 2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제108조(a)로서 도서관이나 기록관에서의 복제 또는 배포가 직접적 및 간접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자체 수장물이 대중에게 개방되고 소속기관의 연구자와 전문분야의 다른 연구자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제물 혹은 레코드상에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거나, 없을 때는 해당 저작물이 저작권 보호자료라는 취지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1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하나인 제108조(c)는 저작물이 손상으로 인한 변질·분실·도난당하였거나 보존된 저작물의 해당 형식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기계나 장치가 제품화되지 않아 시장에서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양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

<표 11> 자료보존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

구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한 국
조문번호	108조(a, c)	42(1)~43조	×	122조(5) 8호	31조 1항 2호	31조 1항 2호
복제주체	도서관과 기록관	법적 사서와 기록관리자	-	공공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정령상 도서관* (비영리적 활동)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대상자료	도서관 소장자료, 분실·도난자료, 저작물을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미간행물	도서관·기록관의 영구보존용 자료, 미간행물	-	모든 자료	도서관 자료 (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기타 자료)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
복제부수	보존 1, 대체 3부	-	-	-	-	-
복제목적	보존, 안전, 대체	보존과 대체	-	보존	보존	보존

* 제1조의 3은 '1. 도서관법 제2조 제1항의 도서관, 2. 학교교육법 제1조의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 설치된 도서관 및 유사한 시설, 3.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설치된 도서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으로 3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도서관이나 기록관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② 디지털 형태의 복제물 또는 레코드가 도서관이나 기록관 외의 시설을 통하여 대중에게 디지털 형태로 제공될 수 없는 경우

다음으로 영국의 저작권법 제42조(1) 및 제 43조는 법률에 명시된 도서관 사서에게 대체용 및 영구보존용 자료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복제를 인정한 규정은 없다. 독일은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권리제한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진복제에 대한 보상 의무를 규정한 제54조(a)(2)가 공공도서관에서 사진복사로 복제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보상금지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도서관 복제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

리고 프랑스의 저작권법 제122조(5) 8호는 공공에게 서비스하는 도서관에 한하여 모든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은 각각 정령과 도서관법에 규정된 도서관으로 하여금 자료보존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복제대상을 제31조 제1항의 2호에서 '도서관자료'(도서관 등의 도서, 기록, 기타 자료)로 규정한 반면에 한국은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로 한정하고 있다.

3.3.2 학습·연구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

각국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제한 중에서 이용자의 학습·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 복제서비스를 비교·분석하면 <표 12>와 같다.

먼저 미국은 저작권법 제107조(배타적 권리: 공정이용)에서 '... 연구나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공정이용(복사나 레코드의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표 12> 학습·연구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

구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한 국
조문 번호	108조(a)~(e)	29조(1), 38-39, 43조	52a~b조	122조(5) 8호	31조 1항 1호	31조 1항 1호
복제 주체	사서와 기록관리자	법률에 명시된 사서와 기록관리자	공공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공공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비영리 활동)	도서관
대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 기사 • 자관 및 다른 기관 장서의 일부 • 자료의 전부 및 부속물 • 미간행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 기사 • 발간된 문학·연구·음악 저작물의 상당 부분 • 미간행 자료 중 문학·연구·음악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1989년 8월 1일 이후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의 장서에 포함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물 (명시적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자료의 일부 • 출판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정기간행물의 개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자료의 일부
복제 부수	3부	1부	소장자료의 복본수 이내	-	1부	1부
복제 목적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사적 학습, 학술연구	비상업적 목적의 연구나 사적 학습	연구 및 사적 학습	도서관 현장에서의 열람서비스	이용자 요청에 의한 연구조사 지원	이용자 연구조사 지원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108조(b)는 다음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학습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3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복제대상 자료(정기간행물 기사, 자관 및 다른 기관 장서의 일부, 자료의 전부와 그 부속물)가 도서관이나 기록관의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② 디지털 복제물이나 레코드가 다른 디지털 형식으로 배포되지 않거나 도서관 및 기록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다음으로 영국 저작권법의 일반규정인 제29조(1)은 '연구 또는 사적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문예저작물(DB는 제외), 연극·음악·미술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제38조(정기간행물 기사), 제39조(기존 간행물), 제43조(미간행물)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저작물과 그 부속자료를 복제하여 사적 학습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이용자가 복제물을 학습이나 사적 연구에 이용하며,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서에게 인식시킬 경우
- ②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반자료는 동일한 복제물을 1부 이상, 정기간행물은 동일한 기사를 2부 이상 또는 특정 권호에 포함된 2편 이상의 기사를 제공받거나 어떤 자료의 전문 대비 부분복제의 합리적 비율을 초과하는 복제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조건에 동의한 경우
- ③ 복제물 수령자는 자료를 발간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도서관이나 기록관의 분담금 포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리고 독일 저작권법은 제52a조에서 '연구 및 사적 학습을 위한 공중재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2b조에서 '공공의 도서관이 소장자료 및 그것의 복본수 내에서 사적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는 제122조(5) 8호에서 '공중에 개방되는 도서관이 현장에서 저작물을 열람시키는 조건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한국의 저작권법은 각각 제31조 제1항 1호에서 '도서관 등은 이용자의 조사연구를 위한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에 대한 복제물을 1인에 1부씩 제공할 경우'로 한하여 복제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3.3.3 상호대차를 위한 도서관의 복제 및 송부

각국의 저작권법이 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을 비교·분석하면 <표 13>과 같다.

먼저 미국의 저작권법 108조(d)의 2호는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복제물이나 레코드를 소유하는 한편, 도서관이 당해 복제물 또는 레코드를 사적 연구 및 학문조사 외의 용도로 이용한다는 취지를 통지받지 않은 경우와 저작권국 규칙의 요건에 따라 명확한 저작권 주의를 복제물 신청장소에 게시하고 신청용지에 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가 대출을 요청한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

〈표 13〉 도서관 상호대차(ILL/DDS)를 위한 복제 및 송부

구 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한 국	
조문번호	108(d)(2), (g)(2)	41조(1)	×	×	31조 3호	31조 3항	
복제 제공	주체	도서관과 기록관	법령상 도서관	-	-	도서관((비영리))	도서관
	대상 자료	제108조에 부합하는 자료	정기간행물 논문, 문학·연극·음악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	-	-	도서관자료(도서, 문서, 기타 등)에 포함되는 자료	절판 등을 이유로 이 용할 수 없는, 도서관 장서에 포함된 자료
	목적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와 배포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 제공	-	-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 제공	다른 도서관에 복제물 제공
팩스·전자 우편 송부	×	×	×	×	×	○ (판매용은 5년이 경과해야 가능함)	

이 소장하는 자료 중에서 저작권이 있는 집합저작물 또는 정기간행물의 기사 1건을 복제하거나 기타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8조(g)의 2호는 도서관이 저작물의 구독 또는 구입을 대신할 정도로 다량의 복제물이나 레코드를 입수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서관 상호협정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게다가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 해당하는 자료는 팩스나 디지털 형태로 복제·배포·전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은 저작권법 제41조(사서에 의한 복제: 다른 도서관에의 복제물 제공) 제1항에서 소정의 도서관 사서는 주어진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정기간행물의 기사와 문예·연극·음악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한하여 기사의 본문이나 저작물과 그에 수반되는 부속물을 복제하여 다른 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팩스나 인터넷 등을 통한 송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비록 제29조의 공정이용을 적용한 복제의 허락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법원에서 사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

스는 도서관 상호간의 복제와 송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본은 저작권법 제31조 3호에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기타 이에 준하는 이유로 입수가 곤란한 도서관 자료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전송수단을 명시한 조항은 없다. 반면에 한국은 제31조 제3항에서 '도서관 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전부나 일부가 판매용 발행도서 등에 해당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3.3.4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전송

각국의 저작권법이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복제 및 전송을 허용하는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면 〈표 14〉와 같다.

먼저 미국의 저작권법 제121조(배타적 권리의 제한: 시각 및 다른 장애인을 위한 복제)의 (a)는 '제106조(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배타적

권리)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락받은 단체가 비연극적 언어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와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위한 특수형식으로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21조(d)에서 허락받은 단체(authorized entity)를 '시각장애자 등의 훈련, 교육 또는 낭독이나 정보접근 수요를 위하여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도 제121조(a)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저작권법 제31B조(1)은 '인가받은 기관이 상업용으로 제작된 문학, 연극, 음악, 예술저작물의 전부나 일부의 복제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장애로 인하여 복제물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접근가능한 형태로 복제물을 작성 및 제공하는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1B조(12)는 인가

받은 기관(approved body)을 '교육기관 및 비영리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도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물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제31B조(1)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31B조(13)은 제공에 대여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저작권법에는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 및 배포를 허용한 규정과 이를 유권 해석할 조항이 없다.

그리고 일본 저작권법은 제37조(점자에 의한 복제) 제1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점자로 복제'할 수 있고, 제2항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점자방식으로 처리하고,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공중송신(방송이나 유선방송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은 '점자도서관, 기타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정령이 규정하는 시설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대출용 혹은 자동공중송신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녹음하거나 자동송신할

〈표 14〉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송신

구분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조문번호	121(a), 121(d)	31B(1), 31B(12~13)	×	×	37조 1~3항, 37조의 2	33조 1~2항
대상물	비연극적 언어저작물	문학·연극·음악·예술의 저작물	-	-	공표된 저작물	공표된 저작물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락받은 단체(훈련, 교육 또는 낭독이나 정보접근 수요를 위하여 특수서비스를 주된 임무로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나 정부기관) 복제·배포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하기 위한 특수형식으로 복제·배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가받은 기관(교육기관과 비영리단체) 전부나 일부의 합법적 복제물을 소유하는 경우 장애로 인하여 복제물에 접근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의 사적 이용 이용가능한 자료의 상업적 복제·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취지를 표시하고 충분한 인식을 수반하는 경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자도서관, 기타 시각장애인 복지증진 목적의 정령이 규정하는 시설 전자계산기를 이용한 점자처리, 기록매체에 기록하거나 공중송신(방송·유선방송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은 점자로 복제·배포 시각장애인 등의 복지증진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공표된 어문저작물의 녹음, 전용기록방식에 의한 복제·배포·전송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37조의 2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동공중송신을 허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저작권법의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1항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2009년 3월 25일자로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저작권법시행령』 제12조는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며, 제14조에도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점자도서관을 포함시키고 있다.

- ①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

가 설립한 전문도서관 중에서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목적의 법인이나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3.5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의 금지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의 사전적 보호에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이에 미국의 저작권법은 제1201조(a~b, d), 영국은 개정된 제296ZA~ZF조, 독일은 2003년에 개정된 제95a조(기술적 보호)와 제95c조(권리관리 정보), 프랑스는 제331-5조, 일본은 제30조 1항 2호, 한국은 제31조 7항에서 각각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회피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을 축조 분석하면 <표 15>와 같다.

모든 국가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회피를

<표 15> 기술적 보호조치 회피의 금지

구분		미 국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일 본	한 국	
조문번호		1201(a)~(b), (d)	296ZA-ZF	95(a, c)	331-5조	30조 1항 2호	31조 7항	
금지 행위	회피	○	○	○	○	사적 재생산	컴퓨터 프로그램	
	회피 장치 취급	제공	○		○	○	○	○
		수입	○	○	○	○	○	○
		제조	○	○	○	○	○	○
		이전			○	○	○	○
		대여			○	○	○	○
		판매		○	○			
		운송	○					
광고			○					
통제	서비스 제공	○		○	○	○	○	
	접근	○	○	○	○	×	×	
도서관 사용의 면제	소유권	○	○	○	○	×	○	
	면제	×(비영리는 면제)	×	×	×	×	×	

금지한 가운데 일본은 제30조 제1항 2호에서 사적 이용을 위한 재생산에, 한국은 제30조 7항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기술의 제공, 수입, 제조, 이전, 대여 등에 대해서는 회피장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제의 경우, 서양 4개국은 접근 및 소유권을 모두 통제하는 반면에 한국은 소유권만 통제하며, 일본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영국은 비영리 도서관에 한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저작권법 제31조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각호는 대통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4가지(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복제방지, 접근제한, 확인조치, 방지장치의 설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 직원 교육,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표지의 부착,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로 명시하고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저작권법상 권리보호와 공정이용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작자의 권리제한을 검토하고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을 축조 분석하였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조항은 미국과 영국이 규정한 반면에 나머지 국가는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개별조항은 영미와 한일이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개괄적이다.

둘째, 자료보존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는 영미, 프랑스, 일본, 한국이 허용한 반면에 독일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상자료는 미국, 영국, 프랑스는 미간행물도 포함시킨 반면에 한국은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로 제한하고 있다. 복제부수에 대한 규정은 미국이 유일하게 보존용은 1부, 대체용은 3부로 명시하고 있다.

셋째, 학습·연구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는 모든 국가가 권리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대상자료는 보존용 복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미간행물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은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로 제한하고 있다. 복제부수는 미국이 3부, 영국·일본·한국은 1부, 독일은 장서의 복본수 이내로 규정한 반면, 프랑스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넷째, 도서관 상호대차(ILL/DDS)를 위한 복제 및 송부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허용한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의 저작권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대상자료는 영미와 일본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비하여 한국은 도서관 소장자료로 제한하고 있다. 팩스 및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는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으로, 한국은 판매용으로 발간된 후 5년이 경과한 자료로 한정하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복제와 전송의 경우는 미국, 영국, 일본, 한국이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는 규

정하지 않고 있다. 대상자료는 미국이 비연극적 언어저작물로 한정하였으나 영국은 연극적 저작물도 포함시키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모든 공표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기술적 보호조치는 모든 국가가 회피를 금지한 가운데 대개 기술의 제공, 수입, 제

조, 이전, 대여 등에 대하여 회피장치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국은 비영리 도서관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유권 및 접근통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모두 통제하는 반면에 한국은 소유권만 통제하며, 일본은 분명하지 않다.

참 고 문 헌

- [1] 박덕영. 2008. 국제조약상 저작권제한과 예외규정 및 국내법상 권리제한 입법. 『산업재산권』, 25: 327-328.
- [2] 文化廳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会. 2009. 『著作物の流通・契約システムの調査研究: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東京: 文化廳.
- [3] 文化廳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会. 2009. 『著作権制度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別冊): その他の諸外國地域における権利制限規定に関する調査研究』. 東京: 文化廳.
- [4]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株式会社. 2008. 『知的財産立國の實現に向けた著作権制度の改善に関する調査研究: 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伴う著作物の創作・利用形態の変化について』, [cited 2010, 6, 12].
<http://www.bunka.go.jp/chosakuken/pdf/riyoukeitai_20_03.pdf>.
- [5] 三井情報開発株式会社 総合研究所. 2006. 『知的財産立國に向けた著作権制度の改善に関する調査研究: 情報通信技術の進展に対応した海外の著作権制度について』. 東京: 同研究所.
- [6] 日本知的財産協會 デジタルコンテンツ委員会. 2009. 権利制限の一般規定に関する意見, [cited 2010, 3, 12]. <http://www.jpia.or.jp/jyohou_hasin/teigen_iken/09/090918.pdf>.
- [7] 崔鍾喆. 2009. 著作財産權 制限規定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 [8] 横山 久芳. 2009. “著作権の制限とフェアユースについて.” 『パテント』, 62(6): 48-62.
- [9]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2006. *Economic Contribution of Industries Relying on Fair Use*. Washington, D.C.: CCIA.
- [10] Crews, Kenneth. 2008. *Study on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Geneva, WIPO.

- [11] 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And Library Copyright Alliance. 2009. "Statement of Principles on Copyright Exceptions and Limitations for Libraries and Archives." [online]. [cited 2010. 5. 23]. <http://plip.eifl.net/docs/ip_docs/statement-principles/downloadFile/attachedFile_f0/StatementofPrinciples_English.pdf?nocache=1261508729.81>.
- [12] Lepage, Anne. 2003. "Overview of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Copyright in the Digital Environment." *e-Copyright Bulletin*(Jan.-Mar. 2003). [online]. [cited 2010. 4. 20].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96/139696e.pdf>>.
- [13] Library Copyright Alliance (LC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IFLA), Electronic Information for Libraries (eIFL.net). 2008.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for Libraries." [online]. [cited 2010. 5. 4]. <<http://www.aallnet.org/aallwash/LCAPosition110308.pdf>>.
- [14] NICT>り事務所. 2009. 『欧州主要國における著作権法制とデジタル図書館調査報告書』. [online]. [cited 2010. 2. 15]. <www2.nict.go.jp/r/r313/images/stories/pdf/re090212.pdf>.
- [15] Okedij, Ruth L. 2006. *The International Copyright System: Limitations, Exceptions and Public Interest Consider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Geneva: ICTSD & UNCTAD.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Deok-Young Park. 2008. "Copyright Limitations and Exceptions in International Treaties and Domestic Legislations."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25: 327-328.